

[2021년도 경찰채용시험 1차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021년도 경찰채용 1차시험이 2021년 3월 6일 시행되었다. 지문들이 비교적 길었고, 시험에 처음 출제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아서 수험생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난이도는 중상(中上) 정도이다. 내가 어려웠다면 다른 사람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점수가 약간 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기 바란다. 시험보신 분들 아침부터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형법과 형사소송법, 판례와 기출문제, 객관식과 주관식의 달인 !! 합격청☆부업자 윤경근 선생님 -
-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형사소송법 자료실 !! 합격청☆부 형사법 교실(cafe.daum.net/passchungbu) -

1. 출제 내용(진도 구분) * 박스문제는 4개 지문으로 처리함

☞ 80개 지문(4개 지문 × 20문제)

편	절	목 차	출 제 비 율	지문수	문제수
서론	기초이론	형소법의 의의법원적용범위		0	0
		형소법의 이념·구조			
	소송주체 등	법 원		8	2
		검 사			
		피고인	4		
		변호인	4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수사와 공소의 제기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수사의 의의, 수사기관 등	1	13	3.2
		수사의 조건	1		
		수사의 단서	7		
		수사의 일반원칙			
		임의수사	4		
	강제수사(처분)	체포·구속	4	8	2
		구제수단(접견적부심·보석등)			
		입수수색통신제한조치	4		
		증거보전·증인신문청구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수사의 종결	3	7	1.7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공소제기후 수사			
		공소(권)와 기본원칙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공소시효	4		
공판 절차	서론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	1
		공판실리의 범위	4		
	공판절차	공판준비와 공판기일절차	4	12	3
		증거조사	8		
	특수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4	1
		공판절차의 갱신·정지 등			
증거	서론	국민참여재판	4	0	0
		증거의 의의·종류 등			
		증거재판주의			
	증거능력	자유심증주의		8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4		
	증명력	증거동의		4	1
		지배의 보강법칙			
		탄핵증거	4		
		공판조서의 증명력			

재판과 상소	재판일반	재판의 기본개념			4	1
		종국재판	4			
		재판의 확정과 효력				
		소송비용				
	상소통칙	상소의 의의종류			4	1
		상소권과 상소의 이익				
		상소의 제기포기취하				
		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			
		파기판결의 구속력				
	상소각칙	항 소			0	0
		상 고				
		(준)항고				
비 상 구 제 절 차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재 심	4		4	1
		비상상고				
		약식명령				
		즉결심판				
		소년형사절차				
		배상명령				
	재판의 집행 등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0	0

2. 출제 내용(이론·조문·판례 구분)

내 용	지문수 (%)	출 제 비 율
이 론	(0%)	
조 문	20 (25%)	
판 례	60 (75%)	

3. 문제 형식

형 식	문제수 (%)	출 제 비 율
지문나열형	17 (85%)	
박스형	3 (15%)	
사례형	0 (0%)	

4. 출제된 최신 판례

연 도	시행일	판 례 번 호
2021년도	2021년 3월 6일	대법원 2020.12.10. 2020도2623 핵심증인 채택취소 사건

이 기출문제 해설을 볼 수 있는 분은 아래 밑줄친 다음(DAUM) 카페(합격청☆부 형사법 교실)의 '특별회원'으로 한정됩니다. 특별회원이 아닌데 이 자료를 본다는 것은 부정(不正)하게 공부하는 것이므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 형법과 형사소송법, 판례와 기출문제, 객관식과 주관식의 달인 !! 합격청☆부업자 윤경근 선생님 -
-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형사소송법 자료실 !! 합격청☆부 형사법 교실(cafe.daum.net/passchungbu) -

1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후에도 효력이 있다.
- ③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④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해설

- ① 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후방학석 요구 사건
- ② 규칙 제158조, 대법원 1968. 2.27. 68도64
- ③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28. 2009도579)
- ④ 대법원 1993.12. 3. 92도49

정답 ③

2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헌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 ㉡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에는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 ㉢ 검사가 당해 재판의 피고인에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경우,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 ㉠㉡ 2 항목이 옳다.
- ① 대법원 2015. 5.28. 2015도3136 새마을금고 직원 사건
- ㉢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은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한정된다.**(제244조의3 제1항, 제283조의2 제2항)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은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이 될 수 없다.
- ㉣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제283조의2 제1항)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③

3 친고죄에서의 고소취소 및 고소권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고소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취소로 보기 어렵지만,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공소제기 이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
- ②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을 갖는다.
- ③ 일단 고소를 취소한 자는 고소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④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될 수 없으므로,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그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해설

- ① 대법원 1983. 9.27. 83도516, 대법원 2002. 7.12. 2001도6777 주병진 사건
-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다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9. 4.15. 96도1922全美 외음부 열상 사건)
- ③ 제232조 제2항
- ④ 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방이동 모로코모텔 간통사건

정답 ②

4 전속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 ② 전속고발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는 이상 甲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③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 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9.30. 2008도4762 합성수지 담합 사건)
- ② 대법원 1995. 3.10. 94도3373 고발전 구속 사건

- ③ 대법원 2009.10.29. 2009도6614
 ④ 대법원 2015. 9.10. 2015도3926 판유리 담합사건

정답 ①

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협의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해설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또는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 7. 대통령령 제31089호로 제정된 것)

- 제21조 【심야조사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 ② 수사준칙 제23조 제1항
 ③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④ 수사준칙 제20조

정답 ①

6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③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그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는 이상,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 ① 대법원 2008. 3.27. 2007도11400
 ② 제200조의4 제3항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 체포현장에서 물건을 압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2.24. 2009도11401)
 ④ 대법원 2014. 8.26. 2011도6035 이기하 오산시장 수뢰사건

정답 ③

7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서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 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등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는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 ①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 노래방 화장실 몰카 사건
 ② 대법원 2020. 4.16. 2019도3526
 ③ 대법원 2017.11.14. 2017도3449 원선택 대전시장 사건
 ④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4. 9. 2019도17142 지하철 몰카 사건11)

정답 ④

8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③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의 절차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①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 ② 제245조의5 제1호, 제197조의2 제1항
- ③ 제197조의3 제1항부터 제5항
- ④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2호)

- ㉠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 대법원 2001. 6.29. 2001도1091 해변가 직장동료 폭행 사건
- ㉡ 대법원 2019. 6.13. 2019도4608
- ㉢ 대법원 2019. 6.20. 2018도20698 **全美 재심판결의 확정력** 사건
- ㉣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중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중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10.25. 2018도9810)

- 5 -

10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다음 날’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을 의미한다.
- ②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
- ③ 무고죄에 있어서 그 신고 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고,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해설

-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부터,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 즉,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각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선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10.11. 2011도17404)
- ② 대법원 2018.10.12. 2018도6252
- ③ 대법원 2008. 3.27. 2007도11153 폭행일시 특정 사건
- ④ 대법원 2017. 1.25. 2016도15526 패러슨 이태원 살인사건

정답 ①

11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 ① 현직 경찰 공무원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만 20세의 자
- ③ 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
- ④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자

해설

- ① 국참법 제18조 제7호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 ② 국참법 제17조 제2호 <결격사유>
- ③ 국참법 제19조 제2호 <제척사유>
-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이다.(국참법 제17조 제3호) <결격사유>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배심원 결격사유가 아니다.

정답 ④

12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의 소송기록 등사 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용목적에 제한하여 등사를 허가하였다면, 피해자는 그 결정에 불복하여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④ 법원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해설

- ① 제294조의4 제1항
 ② 재판장이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94조의4 제4항·제6항)
 ③ 제163조의2 제1항
 ④ 규칙 제84조의5 제1항

정답 ②

13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③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④ 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공소외인을 구인하여 달라는 검사의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해설

- ① 대법원 2020.12.10. 2020도2623 핵심증인 채택취소 사건
 ② 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허위 살인자백 사건
 ③ (1)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설령 증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2)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진해 필로폰 매매알선사건)
 ④ 대법원 2008. 9.25. 2008도6985 서울 합정동 강간사건

정답 ③

14 서류등의 열람·등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는 피해자 및 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명하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해설** ① 제198조 제3항, 검사는 (피해자 및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5항)
- ② 제266조의4 제1항
 - ③ 제266조의4 제5항
 - ④ 제266조의11 제1항·제3항

정답 ①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②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③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감청으로 그 녹음된 통화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 해설** ① 대법원 2011. 6.30. 2009도6717 총복장 강제연행 사건
- ②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 ③ 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공범자 통화 녹음사건
 - ④ 대법원 2017.11.29. 2014도16080 노래방 압수수색 사건

정답 ②

16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바,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대법원 2021. 2.25. 2020도17109 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 사건

㉡ 대법원 2019. 8.29. 2018도14303全美 국정농단 박근혜 전대통령 사건

㉢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24. 2010도5948 대전 동거남 폭행치사사건) 지문의 진술조서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므로(A → 乙 → 甲 → 수사기관 조서 작성) 피고인 A가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제318조의2

정답 ③

17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②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증거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 ③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그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① 대법원 2012. 9.27. 2012도7467

② 대법원 1998. 2.27. 97도1770

③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채택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13. 2013도12507 김래환 의원 비방사건)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채택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대법원 2006. 5.26. 2005도6271

정답 ③

18 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 ②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실시하면 족하다.
- ③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해설

- 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10.12. 93도1512)
- ② 대법원 1977. 7.12. 77도1320
- ③ 대법원 2020. 6. 4. 2018도17454 국회앞 시위 사건1
- ④ 대법원 2020. 3.27. 2017도20455 도로 바닥 페인트스프레이 사건

정답 ①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송 후의 원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소송비용의 부담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원판결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 ① 대법원 2019.10.17. 2019도11540
- ②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정보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환송 후에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리를 같이 한다.**(대법원 1980. 3.25. 79도2105)
- ③ 대법원 2018. 4.10. 2018도1736
- ④ 대법원 2018.10.25. 2018도13150

정답 ②

20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서 담당공무원이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은 후 기록에 첨부하지 않는 바람에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면, 공소기각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으로서 재심사유가 된다.

- ②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 ③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해설

- ①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항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담당공무원이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재항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3. 96도51)
- ② 대법원 2018.12.28. 2017도107 삼청교육대 계엄포고 사건
- ③ 대법원 1984. 4.13. 84도14
- ④ 대법원 2019. 9.26. 2017도11812

정답 ①

